

하자보수보증서

보증서번호 제 별 첨 호

보증 금액	별 첨			
계약 금액	일금 일십구억사천오백구십만육천구백일십일원 (₩1,945,906,911)			
계약 명	기재공사(별첨참조)			
계약 일	2009년 08월 07일			
계약이행기일	2010년 04월 05일			
하자 담 보 책임 기간	별 첨	부터	별 첨	까지
보증 기간	별 첨	부터	별 첨	까지
계약자	상호	(주)돌찌귀	대표자	황일상
특기사항	1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2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뒷면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구분 기재된 내역에 따라 각 공종별로 이를 부담합니다. 3.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)가 구성될 경우 보증책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		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10년 03월 24일



건설보증
협회
Construction Guaranty Association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
이사장 송 용 찬

대리인 삼성지점장 신정식

영등포구청 귀하

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우리조합은 뒷면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연락처 [삼성지점] 02-3449-216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-10 해성2빌딩 9층

[강남보상센터] 02-3449-87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-2 18층

홈페이지 <http://www.cgbest.co.kr> [고객상담실] 1588-1444

하자보수보증약관

- 제1조 (보증책임)** 건설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"채무자"라 한다)가 암면 기재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(준공)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"보증사고"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"보증채권자"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행 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제2조 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**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법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 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 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 4.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 5.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 6.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- 제3조 (보증채무의 이행방법)**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제380조에 따라 제3자(이하 "하자보수업체"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.
- ② 조합이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공사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등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제4조 (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)**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-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자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제5조 (보증서의 효력상실)** ①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제6조 (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**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,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보증서 또는 그 사본
 2.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3.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
 4.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
-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- 제7조 (보증채무의 확인조사)**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- 제8조 (보증금 지급시기)**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청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제9조 (대위 및 구상)**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-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,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분쟁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)** 조합과 보증채권자간에 하자담보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합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"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"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11조 (관할법원 및 준거법)**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 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
하자보수보증내역서

보증번호 17724	보증금액	일금 팔백칠십오만육천오백팔십일원			(₩8,756,581)
	계약금액	일금 이억구천일백팔십팔만육천삼십칠원			(₩291,886,037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종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기둥 및 내력벽공사		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20년 04월 04일	까지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20년 04월 04일	까지
보증번호 17725	보증금액	일금 팔백칠십오만육천오백팔십일원			(₩8,756,581)
	계약금액	일금 이억구천일백팔십팔만육천삼십칠원			(₩291,886,037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종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보, 바닥 및 지붕공사		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5년 04월 04일	까지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5년 04월 04일	까지
보증번호 17726	보증금액	일금 팔백칠십오만육천오백팔십일원			(₩8,756,581)
	계약금액	일금 이억구천일백팔십팔만육천삼십칠원			(₩291,886,037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종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철근, 지붕 및 방수공사		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4년 04월 04일	까지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4년 04월 04일	까지
보증번호 17727	보증금액	일금 일천일백육십칠만오천사백사십일원			(₩11,675,441)
	계약금액	일금 삼억팔천구백일십팔만일천삼백팔십이원			(₩389,181,382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종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지정 및 기초공사 등		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3년 04월 04일	까지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3년 04월 04일	까지
보증번호 17728	보증금액	일금 일천사백오십구만사천삼백이원			(₩14,594,302)
	계약금액	일금 사억팔천육백사십칠만육천칠백이십칠원			(₩486,476,727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종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대지조성공사 등		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2년 04월 04일	까지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	부터	2012년 04월 04일	까지

하자보수보증내역서

보증서 번호 17729	보증금액	일금 오백팔십삼만칠천칠백이십일원	(₩5,837,721)
	계약금액	일금 일억구천사백오십구만육백구십일원	(₩194,590,691)
	계약명 또는 사업명(공중명)	도림동 리첸힐스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등	
	하자담보책임기간	2010년 04월 05일 부터 2011년 04월 04일 까지	
	보증기간	2010년 04월 05일 부터 2011년 04월 04일 까지	
보증금액 합계		일금 오천팔백삼십칠만칠천이백칠원	(₩58,377,207)
계약금액 합계		일금 일십구억사천오백구십만육천구백일십일원	(₩1,945,906,911)